

'24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

- '24년 4회차 신규 고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사전 내국 인구인노력(모든 업종 7일*)을 거친 후, '24.10.7(월)~ 10.18(금) 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 직접방문 또는 홈페이지**(www.work24.go.kr)를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* 모든 고용허가 허용업종에 대해서 고용허가 신청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내국인구인노력 기간 7일(외고법 시행규칙 개정, '24.1.10.자)
- ** 고용24 전산망 구축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한 고용허가 신청 시 기존 회원도 신규 회원 가입 절차를 거쳐 고용허가 신청 가능(상세한 사항은www.work24.go.kr 공지란 참고)
 - '24.10.18.(금)까지 모든 서류가 제출(보완 포함) 완료되어야 하오니, 서류제출 시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, 서류제출이 늦어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기에 신청 바랍니다.
- 신규 외국인력은 「점수제」 방식으로 배정되므로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,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되며,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 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.
- 결과발표는 11.4(월) 14:00, 16:00 2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드리고, 고용허가제 홈페이지(www.work24.go.kr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 -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방문일자 및 시간도 지정해 드리니, 지정된 일시에 지방관서를 방문하시거나 EPS홈페이지(직접선택방식을 체크한 사업장에 한함)를 통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.
- * 고용허가서 발급일자: 제조업, 조선업, 광업 11.5(화)~11.8(금)
농축산업, 어업, 임업, 건설업, 서비스업 11.11(월)~11.15(금)
- 상세 일정, 점수제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 「'24년 4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일정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고 용 노 동 부

붙임1 '24년 4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 일정

□ 해당업종 : 제조업, 조선업, 광업, 농축산업, 어업, 임업, 건설업, 서비스업

□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: '24.10.7(월)~10.18(금)

-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 노력(모든 업종: 7일*)을 거쳐야 합니다.

* 모든 고용허가 허용업종에 대해서 고용허가 신청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**내국인구인노력 기간 7일**(외고법 시행규칙 개정, '24.1.10.자)

-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관할 지방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, 홈페이지(www.work24.go.kr)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
☞ 유의사항

- ① 내국인구인노력을 위한 구인신청은 지방관서(워크넷)를 통해 하셔야 내국인 채용 시 **가점혜택**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②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신청기간 중 언제든지 제출하면 되므로 미리 줄서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.
- ③ 사업장 변경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신규 인력 고용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에 **전환신청**을 하여야 합니다.
 - 다만,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급적 신청기간 중에 고용허가신청을 새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.
- ④ 뿌리산업으로 상향된 고용허용인원을 추가로 신청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확인서를 지방관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.

- 고용허가서 발급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등을 위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**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사업주용)**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
- 외국인근로자를 '**지방관서 알선**' 또는 '**직접 선택**'할 수 있으니 고용허가신청 시에 알선방식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직접선택 방식을 선택한 경우 EPS홈페이지(www.work24.go.kr)에 접속하여 근로자를 선택한 후 2시간 내에 채용처리를 완료하셔야 합니다.
- 지정된 시간 내에 채용 및 발급 처리가 안 된 경우 지연 사업장 발급 시에 허가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, 지방관서 알선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관서 담당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-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 주거시설표·사업장시설(업무내용) 확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 - ① (기숙사 시설표) 고용허가 신청 시 '외국인 기숙사 시설표'와 함께 증빙자료(사진 또는 동영상)**를 제출(또는 EPS홈페이지 입력)
 - * 미제출시 점수제 감점(전 업종 적용)
 - ** (사업장 직접입력) EPS홈페이지 - 고용허가 신청 - 기숙사 시설표
 - 기숙사 시설을 가설건축물, 사업장 건물, 기타 등으로 체크한 경우 "가설건축물 신고필증" 또는 "건축물대장" 등을 제출
 - 주거시설 정보가 지자체에 임시숙소로 신고된 가설 건축물인 경우 주거시설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기준 확인하여 충족 시에 근로자 배정
 - ② (사업장 시설) 사업장 전경,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할 장소 및 업무내용의 시각자료(사진 또는 동영상)를 제출(또는 EPS홈페이지에 입력*)
 - * (사업장 직접입력) EPS홈페이지 - 고용허가 신청 - 사업장 시설 및 업무내용
 - ** 위 사진자료는 근로계약서와 같이 외국인근로자에게 송부됨

□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: 10.23(수)~11.1(금)

- 지방관서에서는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.
 - * 발급요건 미충족 또는 결격사유 해당 시 고용허가 불허
- 발급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제 점수항목 기준에 따라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를 산정하고,
 -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게 되며, 점수가 낮은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부여합니다.

-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 순에 따라 지방관서 방문 일자 및 시간을 지정해 드립니다.

□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안내: 11.4(월) 14:00, 16:00

- 점수가 높은 사업장에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지방관서 또는 EPS홈페이지(직접선택한 경우)에 방문해야 하는 일자 및 시간을 안내해 드리고, 대기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.

* 안내 방법: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(www.work24.go.kr)

□ 고용허가서 발급: 제조업, 조선업, 광업 11.5(화) ~ 11.8(금)

농축산업, 어업, 임업, 건설업, 서비스업 11.11(월)~11.15(금)

-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 지방관서 또는 EPS홈페이지(직접선택한 경우)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지정된 시간 이후에만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미리 오실 필요가 없으며, 지정시간보다 늦게 오시면 순서가 밀릴 수 있고,
 - 당일 방문하지 않으시면 고용허가서 발급이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정된 일자·시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
□ 대기순번 처리

- 고용허가서 취소·포기 사업장 등이 있어 잔여인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기 순번에 따라 미리 문자로 안내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.
- 정해진 발급 인원보다 신청사업장이 많을 경우 점수 순번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배정인원이 모두 소진되면 대기사업장 중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< 점수항목 및 동점자 우선선발 기준 >

- **기본 항목 (4개)** ①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(22.4~30점) ②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('23.12월~'24.5월 까지 6개월간)가 많을수록(22.4~30점) ③신규 고용 신청 인원이 적을수록(제조업: 19~20점, 소수업종: 15~20점) ④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(내국인)를 많이 고용할수록(제조업: 14~20점, 소수업종: 18~20점) 높은 점수 부여

- **가점 항목 (6개)** ①농축산업·어업분야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준수 사업장(0.5~2.5점), ②우수 기숙사 설치·운영 사업장(지방관서 지도점검 결과 우수 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또는 농업 사업장에서 우수기숙사 신청하여 우수기숙사로 등록된 경우 최대 2년간 5점), ③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(산업인력공단이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2점), ④ 귀국비용보험,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(1.5점), ⑤ 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(KOSHA18001) 인증 사업장(각 3점)

- **감점 항목 (9개)** ①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사업장(10점) ②성폭행, 폭행, 폭언, 성희롱,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업장(성폭행 10점, 성희롱 10점, 폭언·폭행 6점, 임금체불·근로조건 위반 5점), ③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 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(성폭행 10점, 성희롱 5점, 폭언·폭행 6점, 임금체불·근로조건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5점), ④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·점검 결과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(건당 0.5~5점, 상해보험 미가입건 감점 제외), ⑤출국만기보험료 2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(1인당 1~5점), ⑥기숙사 시설기준을 미달한 사업장 항목별 1점(최대 10점, 1년간 감점), ⑦기숙사 정보 미제공(미제출) 및 허위정보 제공사업장(각 3점, 1년간 감점), ⑧최근 2년간 산재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(각 5점), ⑨가축 전염병 예방법 위반사업장(1~5점)

- **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:** ①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②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③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④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⑤전산추첨

④ 침 실	① 남 녀 구 분	<input type="checkbox"/> 남녀 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남녀 미구분
	② 근 무 조	<input type="checkbox"/> 근무조 있음 (<input type="checkbox"/> 조별 구분 <input type="checkbox"/> 미구분) <input type="checkbox"/> 근무조 없음	
	③ 침 실 면 적	<input type="checkbox"/> 1인별 2.5㎡ 이상	<input type="checkbox"/> 1인별 2.5㎡ 미만
	④ 침 실 높 이	<input type="checkbox"/> 2m 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 1.5m~2m	<input type="checkbox"/> 1m~1.5m <input type="checkbox"/> 1m 미만
	⑤ 거 주 인 원	침실 1개 당 () 명	
	⑥ 수 납 공 간	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
	⑦ 잠 금 장 치	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

❖ 세부 작성방법

- 침실구분: 층 또는 벽으로 별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을 것
- 근무조: 근무시간이 서로 다른 근로자

⑤ 화 장 실	① 유 무	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
	② 종 류	<input type="checkbox"/> 수세식	<input type="checkbox"/> 재래식
	③ 위 치	<input type="checkbox"/> 숙소 내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숙소 외부
	④ 잠 금 장 치	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

⑥ 세 면 및 목욕시설	① 유 무	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
	② 종 류	<input type="checkbox"/> 입식세면대 <input type="checkbox"/> 샤워시설	<input type="checkbox"/> 욕조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
	③ 위 치	<input type="checkbox"/> 숙소 내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숙소 외부
	④ 온 수	<input type="checkbox"/> 온수 사용가능	<input type="checkbox"/> 온수 사용불가
	⑤ 잠 금 장 치	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

⑦ 난방시설	① 유 무	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
	② 종 류	<input type="checkbox"/> 보일러 난방(건식온수난방 포함) <input type="checkbox"/> 전기필름·전기패널	<input type="checkbox"/> 연탄보일러 <input type="checkbox"/> 재래식 온돌

❖ 세부 작성방법

- 난방시설은 난방을 위해 건물에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전기장판, 난로 등 난방기구는 미포함

⑧ 냉방시설	① 유 무	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
	② 종 류	<input type="checkbox"/> 선풍기 <input type="checkbox"/> 에어컨	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

⑨ 채 광 및 환기시설	① 유 무	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
	② 종 류	<input type="checkbox"/> 개폐형 창문 <input type="checkbox"/> 폐쇄형 창문(환풍기 설치)	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

⑩ 소방시설	<input type="checkbox"/> 소방시설 설치(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모두 설치) <input type="checkbox"/> 소방시설 미설치
--------	--

❖ 세부 작성방법

-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모두 설치한 경우에만 설치에 표시, 하나라도 없으면 미설치에 표시

20 . . .

대 표 자 성 명: (인)

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(사업주용)

(사업주) 성 명 :
생년월일 :

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허가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기 위해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수집·이용 목적	수집·이용 항목	수집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
고용허가서 발급 및 고용관리 등 고용허가제 운영에 따른 적격여부 확인	성명(사업장명)	고용허가 신청시점으로부터 5년
	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	
	· 임금체불 등 「근로기준법」 위반 여부 ·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위반 여부 ·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위반 여부 등 노동관계법 위반 내용	

귀하께서는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등의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본인은 위 사항을 숙지하고 고용허가제 업무 처리를 위해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 / 동의하지 않습니다.

20 년 월 일

사업장명:

동의자(사업주):

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○○지청)장 귀하